

데이터3법.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

개 **인정보 보호법** \supset 정 **보통신 망법** **신** **용 정보법**

관련법 **전** **자금융 거래법** **온** **라인투자 연계금융법**

개 **인정보 보호법**
2020년 8월 20일 시행

③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Data Flow의 효율화

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	<p>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</p>	<p>(기존)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</p> <p>+</p> <p><신설>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은 모두 만족시 동의없이 제3자 제공가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공목적이 수집목적과 관련되어야 함 2. 수집정황, 처리관행상 제공이 예측가능해야 함 3. 정보주체 or 제3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음 4. 가명처리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가명처리 	<p>보호와 활용의 균형 측면 의미</p> <p>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제공의 기존 Data Flow상에서</p> <p>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재동의받아야하는 비효율 개선</p>
	<p>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</p>	<p>(기존)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</p> <p>+</p> <p><신설>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대상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</p> <p>마이데이터사업자</p> <p>다음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은행(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 금융지주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투자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·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,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,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,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, 보험회사, 여신전문금융회사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, 대부업자, 한국교직원공제회, 공제조합, 기업신용조회회사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,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CB</p>	
가명정보	통계, 과학적연구, 공익적기록 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 3자제공		

개 다음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의없이 이용 · 제공 가능

법

- ①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②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여부를 고려
- ③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

령

1. 개인정보 추가이용목적이 당초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	2. 수집 정황/처리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될 것	3. 추가이용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	4. 가명처리로도 이용가능할 경우 가명처리할 것
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출처 : 데이터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p4

<추가처리의 예시>

- 온라인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(주소정보)를 수집한 경우, 이를 배송 목적으로 택배업체에 제공가능
- ① 추가처리 목적(배송)과 당초 수집목적(온라인 판매)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,
- ② 수집한 정황과 처리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가능성(온라인 구매에 따른 배송)이 있으며,
- ③ 추가처리(배송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제공)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

법규정 보기

신설규정 : 파란색텍스트

조항		내용									
개인 정보의 수집이용	법 15조	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									
개인 정보의 제공	법 17조	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2">법 15조 1항</td> <td>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</td> </tr> <tr> <td>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법 39조의3 2항</td> <td>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td> </tr> <tr> <td>2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</td> </tr> </table>	법 15조 1항	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	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	법 39조의3 2항	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2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			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	법 15조 1항	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									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											
법 39조의3 2항	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									
	2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										
		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									
	령 14조의2	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”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관하여는 ‘이용’ 을 ‘제공’ 으로 본다. 1.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3.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. 가명처리를 하여도 추가적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것									